발행번호
Legistlation V 08.26

2026년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전형 학습모듈

산림관계법규 (기본서)



산림조합

본 자료는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응시생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법령, 대학교재, 산림청 기술서 등 산림경영지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본서로 산림경영지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며, 본 자료 외에서도 시험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p93 '참고자료 목록'과 전공서적 등을 활용하여 학습하시기 바라며, 다른 자료와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자료를 기준으로 필기시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30

Ⅲ. 산림조합법 ····· 44

개 정 일 람 표

번호	개정일자	변경내용	발행번호
01	2021.08.25.	· 도시림·생활림 용어 개정 및 관련 내용 일부 삭제	V 03.21
02	2022.03.30.	· 산림조합법 개정	V 04.22
03	2023.03.13.	· 임촉법 시행규칙(p38) · 산림조합법 시행령(p101) 개정	V 05.23
04	2024.03.15.	· 산림조림계획의 수립、시행 등(p5) · 산림사업의 실행(p11~12)	V 06.24
05	2024.03.15.	·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p42~) 개정	V 06.24
06	2025.07.30.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7p)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21p)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31p) · 산림조합법·시행령(p44~) 개정	V 07.25
07	2026.08.30.	·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요건(24p) ·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p00~) 개정	V 08.26
08			
09			
10			
11			
12			
13			

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용어 정의

1-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 2. 입목(立木)·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 3. 입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 4. 입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1-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1-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1-4.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1. 조경수 · 분재수
2. 가지 · 꽃 · 열매 · 생잎 · 장작 · 톱밥 · 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 · 초본류 · 덩굴류 · 이끼류
4. 산림버섯 · 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 · 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 · 단판 · 섬유판(fiberboard) · 집성재 · 성형재 · 마루판 · 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2.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나.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다. 사유림(私有林): 가목과 나목 외의 산림

3.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국유림 · 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4.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 시행 등

4-1.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4-2.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나.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림의 기능별 구분 · 관리

4-1. 산림청장은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 ·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

의 산림을 다음 각 목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나. 산림재난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다.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 · 문화 · 역사 · 경관 · 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라.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 효율적으로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산림
마.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바.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4-2. 기능구분도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임상도의 작성

5-1. 산림청장은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수목의 종류 · 지름 · 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이하 “임상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5-2. 임상도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6-1. 산림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 · 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6-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가. 임도시설

○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산불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나. 산림청장은 임도의 효율적 설치 · 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7.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7-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나.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 · 굴참나무 · 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다. 상수리나무 · 굴참나무 · 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7-2.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의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다.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8.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8-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는 향후 10년

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8-2.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8-3. 산림경영계획은 다음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나.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 기업경영림계획구 :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8-4.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조림면적 · 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나.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다. 벌채 · 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임도 · 작업로 · 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9.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9-1.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15헥타르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경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2.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 및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 · 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다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마.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함]

9-3.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나.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10.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10-1.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

항 중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생산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살균실 · 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10-2.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한다.

11.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1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1.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임차포지를 포함)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1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 ·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나.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다.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산림사업의 시행

12-1.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12-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 ·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2-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산림사업의 대행 등

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산림병해충 · 산사태 · 산불 등 재해의 예방 · 방제 및 복구사업
나. 산림자원의 조성 · 육성 · 관리를 위하여 설계 ·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3. 산림문화 · 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도시숲등의 조성사업
5.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13-2.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3-3.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13-4.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가.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나.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1. 산사태 · 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14-1.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나.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토목 관련 사업
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 도시림등의 조성 사업
6. 숲길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14-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산림소유자

다.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라. 국유림영림단

마.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함)

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함)

15.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15-1.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5-2.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 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0.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1. 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12.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4.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16.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16-1.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16-2. 시 · 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16-3.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4.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17.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17-1. 산림의 조성 · 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7-2.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신청된 산림이 다음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산림의 면적이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일 것
나.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자원조성(조림 · 수종갱신 ·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17-3.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가.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나. 청소년수련사업
다. 임업기술의 시험 · 연구 및 개발 · 보급사업
라. 농촌 · 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마.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바.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 · 관리사업

18. 산림경영지도원

18-1.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 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 ·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18-2.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 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 · 연구 · 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18-3.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8-4.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이란

1. 임산가공산업기사 · 산림기능사 · 임업종묘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 펄프제지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의2. 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8-5.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이란

1.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산림경영지도원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발 · 배치한다.
3.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기준 및 배치 ·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4.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 중에서 전문지도원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림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사

19-1.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19-2.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9-3.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4. 산림청장은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19-5.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목자원
나.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다.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라. 토양 등 입지환경
마.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20-1. 산림(채종림등과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함)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 · 채취(이하 "입목벌채등")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1. 구역면적
2. 벌채 · 굴취 · 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0-2.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명승지 · 유적지 · 휴양지 ·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 · 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병충해의 예방 · 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 · 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 ·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20-3. 병해충 ·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신고 ·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 · 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 · 산불피해 · 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 · 현사시 · 이태리포플러 · 양버들 · 옻나무 · 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 · 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함)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라.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마. 입목 · 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바.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20-4.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란

1. 풀베기 ·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3.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 · 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전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 · 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자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21.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21-1.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 · 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다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마.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함]

21-2.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나.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21-3.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기준벌기령, 벌채 ·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산림조합이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나.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2. 입목벌채의 허가

22-1.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표시하고 별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나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 · 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마.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조림(의무조림을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함]
바.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함)

22-2.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 ·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나.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다.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함)
라. 기준벌기령, 벌채 ·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마.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바. 복구비의 예치 여부

23. 임산물의 굴취 · 채취허가

23-1.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굴취 · 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 · 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 · 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 · 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함)

23-2.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 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4. 목재의 이용 증진 등

24-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가.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나.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다. 폐목재의 재활용

24-2.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 · 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작성해야 함"
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함)
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필지별 위치 및 면적 등 상세내역

24-3.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나.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다.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 · 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2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5-1.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함)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산림생물의 조사 · 보호 · 증식 및 연구 · 개발
다.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5-3.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생태숲 · 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6.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 · 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 · 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 ·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라.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마.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27.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27-1.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7-2.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나.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다.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함),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28. 산림복원사업의 계획 · 시행 등

28-1.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28-2.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8-3.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나.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다.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라.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마.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8-4.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29. 산림복원의 재료 등

29-1.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가. 자생식물: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 또는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일 것
나. 자연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29-2.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30. 녹색자금

30-1.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을 설치한다.

30-2.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 · 관리한다.

30-3. 녹색자금은 다음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나. 복권수익금
다.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이란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30-4.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나.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다.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교육 · 홍보사업
라. 수목원 · 휴양림 · 수목장림의 조성 · 운영사업
마.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바.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사.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아.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자.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 · 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난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난 방지 · 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31. 자금지원

3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가.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 변경
나. 산림사업의 실행
다. 임업기술지도 ·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함) 및 숲가꾸기의 장려
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 · 관리
마. 종묘 · 종균의 생산 및 개발
바.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 · 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사.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아.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 관리
자.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차.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카. 산림병해충의 예방 · 제거
타.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파.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하.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거. 황사 ·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 · 조사사업
너. 무궁화의 증식 · 보급 · 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더. 수목원의 조성 · 관리 및 운영
러. 그 밖에 산림의 경영 · 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1-2.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 용어 정의

1-1. “임업”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1-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3.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1. 조경수·분재수
>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 4. 산림버섯·떼
>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은 응축액을 포함한다)
> 6.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1-3-1.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2. “산양삼”이란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1-3-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1. 임업기계

구분	범위
임업용 동력기계톱	체인톱날, 가이드 바(guide bar: 이동 방향 제한 장치), 브레이크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 등을 하는 휴대형 기계
임업용 동력천공기	나무주사를 사용한 방제작업, 종균 접종 등을 목적으로 나무에 일정한 깊이의 구멍을 뚫는 휴대형 기계
임업용 윈치(Winch: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겨 올리는 기계설비)	밧줄이나 와이어로프(wire rope: 쇠밧줄)를 이용하여 나무를 끌어올리거나 당겨 올리는 다음 각 목의 기계 가. 휴대형윈치: 작업하는 사람 1명이 사용 가능한 소형 윈치 나. 썰매형윈치: 썰매형태의 소형 윈치를 장착한 지면끌기식 집재기계
반송기(Carriage)	도르래, 견인고리, 제동장치 및 짐내림줄(짐내림줄은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을 갖추고,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된 줄을 타고 주행하면서 나무를 올리는 기계
임업용 동력집재기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된 줄에 윈치 및 반송기(반송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집재기계
타워야더 (Tower-Yarder)	자주식(自走式) 기본차량에 동력집재기 및 고정식 타워 등을 갖추고 타워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架線式) 집재기계
스윙야더 (Swing-Yarder)	자주식 기본차량에 동력집재기, 좌우로 회전하는 크레인 등을 갖추고 크레인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 집재기계
임업용 예불기(刈拂機)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
동력상하차기	자주식 기본 차량에 크레인 및 그래플(grapple: 부피가 큰 물건을 집는 기계)을 갖추고 수집된 원목을 운반차량에 싣고 내리는 기계
임업용 굴착기	목재수확작업용 작업기와 산림토목작업용 작업기를 장착하여 구동할 수 있는 기본차량으로서, 임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3톤 미만의 자주식 굴착기
임업용 트랙터	임업용 부속 작업기를 부착하거나 견인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차량으로서, 동력을 이용한 구동장치, 견인장치 및 승강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원동기계
동력임내차(林內車)	원목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을 갖추고, 산림 내에서 목재운반을 할 수 있는 자주식 기본차량

원목크레인	크레인 및 그래플, 수평 유지 장치 등을 갖추고 원목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하여 옮기는 기계
프로세서(Processor)	칼날, 원목 이송 · 절단 장치 등을 갖추고, 가지치기 및 통나무 자르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주식 기계
하베스터(Harvester)	틸팅(tilting: 기울기 조절)장치, 가지치기에 필요한 칼날 및 원목 이송 · 절단 장치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주식 기계
펠러번처(Feller buncher)	나무를 베는 자주식 기계
포워더(Forwarder)	자주식 기본 차량에 원목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 운전실 등을 갖추고, 원목을 싣고 운반하는 기계
스키더(Skidder)	베어진 나무를 고정시켜 잡는 작업기, 크레인(크레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및 운전실 등을 갖춘 지면끌기식 집재기계 또는 소량의 나무를 운반하는 자주식 기계
압축결속기(Bundler)	목재 수확으로 인한 목재 부산물을 압축 · 결속(結束)하는 기계
목재파쇄기	원판형 디스크 또는 원통 위에 설치된 칼날이나 돌기를 회전시켜 목재조각(wood chip)을 생산하는 기계
톱밥제조기	원통 위에 설치된 다수의 소형 절삭(切削)날을 회전시켜 목재를 5mm 이하의 작은 크기로 절삭 · 파쇄하여 톱밥(sawdust)을 생산하는 기계
임업용 모노레일	산림 내에 주행레일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사람이나 임산물을 운반하는 자주식 기계
임업용 드론	산림 조사, 목재 수확, 산불 · 산사태 · 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예찰 등 산림자원의 조성 · 관리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multicopter)
자동지타기(枝打機)	동력을 통해 나선형 또는 수직으로 나무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칼날 또는 소형 체인톱으로 나무의 가지를 치는 기계
임업용 식혈기(植穴機)	묘목심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토양에 구덩이를 파는 휴대형 기계
산불지휘차	산불진화 지휘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운용 등 방제현장을 지휘하기 위한 다인승 차량
산불진화차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산불현장에 급수를 하거나 직접 산불을 진화하는 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동력펌프, 간이수조, 분배기, 간선호스, 지선호스, 호스 도르래, 연결소켓 및 분사총 등을 갖추고 산불을 진화하는 기계
묘목이식기	토양에 구덩이를 파서 식재기구로 묘목을 이식하고, 필요한 경우 진압용 롤러로 진압하는 자주식 기계
양묘조상기(造床機)	양묘장에서 토양을 쇄토(碎土: 굳어서 덩이진 흙을 부스러뜨림)하고, 고랑 · 두둑을 형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상(床)을

	만드는 기계
나무열매류 수확기	진동을 발생시키는 회전체에 의해 나뭇가지 또는 줄기에 진동을 주어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나무열매류를 분리 · 수확하는 기계
수목굴취기(掘取機)	삽날(spade blade) 또는 반원 형태의 칼날을 토양 속에 삽입하거나 회전시켜 토양과 수목뿌리를 절단하여 분(盆)을 만드는 기계
그 밖의 임업기계	그 밖에 임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임업 장비 및 도구

구분	범위
산림작업용 장비 및 도구	산림작업복, 산림작업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등 산림의 조성 · 육성 · 이용 등에 쓰이는 장비 및 도구
산불진화용 장비 및 도구	산불진화복, 방염(防炎)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및 텐트 등 산불진화에 쓰이는 장비 및 도구
그 밖의 임업 장비 및 도구	그 밖에 임업용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 ·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1-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다.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1-6.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를 말한다.

1-7. "산촌진흥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임업경영의 기본원칙

2-1. 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나.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라.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진흥의 기본원칙

3-1. 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나.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업인의 날

4-1.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5. 재정지원

5-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가. 조림 또는 육림
나. 임업종묘의 생산
다. 임산물의 생산 · 유통 · 이용 · 가공 또는 보관
라. 임도의 조성 · 유지 또는 관리
마.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 보급 및 교육
사.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아.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협업경영

6-1.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 · 판매 · 가공산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7. 대리경영

7-1.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가. 임업인
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라.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마.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바. 다음의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산림토목
사.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8. 겸업임업 등

8-1. 겸업임업 · 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가. 겸업임업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나. 전업임업 :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다. 기업임업 :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 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9.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9-1.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임산물의 생산 · 공급 · 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나.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 · 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다.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라. 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마. 임산물의 유통 · 가격정보의 제공

10. 산림의 이용 · 지원

10-1.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나.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다.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라.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 분재생산사업

10-2.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사업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나. 조성 및 생산에 관련된 기술 지원

다. 조성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

11.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11-1.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2.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3.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 · 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나.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

12. 임업기능인의 양성

12-1. 산림청장 및 시 · 도지사는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나.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다. 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라.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12-2. 산림청장 및 시 · 도지사는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가. 조림사업
나. 숲가꾸기 사업

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라. 양묘사업

마. 입목의 벌채 · 굴취 또는 이식사업

바.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2-3.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능인영림단

○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나. 기계화영림단

○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13.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13-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 · 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2.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가 토양 · 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임야대장
다. 임야도

13-4.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나.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다.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라.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마.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 · 관리할 것

13-5.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14-1. 산림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 · 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 · 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가. 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나. 시 · 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다. 시장 · 군수 · 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14-2.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 · 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시 · 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시 · 군 · 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

○ 연접된 시 · 군 · 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5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5-1.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가.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 · 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나. 농림수산물의 생산 · 가공 · 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다. 산촌의 도로 · 주택 ·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 ·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 · 발전에 관한 사항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바.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아.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수립

16-1.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 · 추진방향 · 기대효과
나.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다.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라.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 · 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17.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17-1.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가. 산림조합중앙회
나. 한국농어촌공사
다.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18.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18-1.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임산물소득원의 개발 · 육성사업
나.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다. 임산물가공업
라. 산림의 이용사업
마. 임업기능인의 양성사업
바. 임업의 기계화사업

19.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19-1.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 · 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인증
라. 임업에 관한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 및 기술지원
마.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바.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 · 평가
사.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아.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 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자. 임업 ·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차.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카. 그 밖에 임업 · 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1.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2.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3.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 ·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6.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7.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8. 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 실태조사 및 임업기계장비의 운영 · 작업 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9. 임상도(林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10. 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11.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에 대한 임업분야 교육 지원
12. 산촌진흥특화사업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13. 임업인 등의 산촌정착 지원
14.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Ⅲ.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3. 4. 5.>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전문조합은 그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3. 4. 5.]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3. 4. 5.]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 6. 20.>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 8.]

[법률 제16199호(2019. 1. 8.)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장 조합 <개정 2013. 4. 5.>

제1절 설립 <개정 2013. 4. 5.>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군·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4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1.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2.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5조(정관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목적·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징수와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수량·가격,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6. 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7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절 조합원 <개정 2013. 4. 5.>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13. 4. 5.]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1조(회전출자)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2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 12. 27.>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절 기관 <개정 2013. 4. 5.>

제31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1. 해산 또는 분할
2. 합병
3.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2조(대의원회) ①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2026. 6. 16.>

⑥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

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0. 3. 24.>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 3. 24.>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2. 대의원회에서 선출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3. 24.>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⑦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⑧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20. 3. 24.>
⑨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만 해당한다)가 궐위(闕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3. 18.>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37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2026. 6. 16.>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 6. 11., 2016. 12. 27., 2018. 2. 21., 2019. 1. 8., 2020. 3. 2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 <2020. 3. 24.>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1.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⑤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11.>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도로·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0.>

[전문개정 2013. 4. 5.]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11., 2018. 12. 11., 2020. 3. 24., 2023. 6. 20.>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구매·공사·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일반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3. 24.>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합은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삭제 <2014. 6. 11.>

④ 삭제 <2014. 6. 11.>

[전문개정 2013. 4. 5.]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2. 21.>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2. 21.>
[전문개정 2013. 4. 5.]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3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4조(「민법」·「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①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③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3. 4. 5.]

제4절 사업 <개정 2013. 4. 5.>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11., 2020. 2. 18., 2020. 3. 24.>

1. 교육·지원 사업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임업인·영림단(營林團) 등의 육성 및 지도
   라. 농촌·산촌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산림 외 소득증대사업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판매·알선
   사. 산림용 종묘(種苗) 등 임산물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아. 가로수 식재(植栽) 및 조경사업
   자. 임목·임야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중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및 판매
   카. 보관사업
   타. 조수(鳥獸) 보호사업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砂防),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마. 산촌개발사업
   바. 산림시업(山林施業)의 공동화(共同化)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감리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保護預受業務)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수목장림·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事業)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 3. 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8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0조(수익분배계약)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절 관리 <개정 2013. 4. 5.>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조합은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13. 4. 5.]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전문개정 2013. 4. 5.]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조합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라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매입소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6. 16.>

[전문개정 2013. 4. 5.]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개정 2013. 4. 5.>

제61조(합병) 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합병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2조(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6조(분할) 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 취소
[전문개정 2013. 4. 5.]

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 시·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70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절 등기 <개정 2013. 4. 5.>

제75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전문개정 2013. 4. 5.]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 9. 20.>

[전문개정 2013. 4. 5.]

제78조(변경등기) ①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

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1조(해산등기)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82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3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도지사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85조(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2. 2. 1.>

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및 중앙회로 하고,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회원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 4. 5.]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6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3조, 제37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제2항, 제56조의4, 제56조의5(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25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1조제4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해산 또는 분할"은 "해산"으로, 제31조의5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1조의6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41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56조의3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86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제3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3장 중앙회 <개정 2013. 4. 5.>

제1절 통칙 <개정 2013. 4. 5.>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8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89조(회원 등)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1조(당연탈퇴 등)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징수와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절 기관 <개정 2013. 4. 5.>

제9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4. 5.]

제96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98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 3. 24.>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 3. 24.>
⑤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① 회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10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② 회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제108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운영계획 수립

5. 총회・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②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목개정 2020. 3. 24.]

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24.]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24.]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

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3. 24.]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3절 사업 <개정 2013. 4. 5.>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11., 2020. 3. 24.>

1. 교육·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임업경제사업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설계·감리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용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연구용역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전문개정 2013. 4. 5.]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 3. 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 3. 24.>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4절 관리 <개정 2013. 4. 5.>

제113조(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15조(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6조 삭제 <2007. 8. 3.>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 <개정 2013. 4. 5.>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3. 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24.>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4. 5.]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같은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6절 준용규정 <개정 2013. 4. 5.>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4항·제5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 3. 18., 2016. 12. 27., 2018. 2. 21., 2020. 2. 18., 2020. 3. 24.>
[전문개정 2013. 4. 5.]

제4장 감독 등 <개정 2013. 4. 5.>

제123조(감독)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26조(경영지도)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신·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제조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제조사를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⑦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29조(수수료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5장 벌칙 등 <개정 2013. 4. 5.>

제13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3. 12. 31.>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2. 부정한 등기를 하였을 때
3. 감독기관·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을 때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0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였을 때
7.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3. 4. 5.]

제1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4. 6. 11.>

③ 제40조제3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3. 24.>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6. 11.>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3. 4. 5.]

제134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 6. 11.>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18.>

[전문개정 2013. 4. 5.]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3. 4. 5.]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이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3. 4. 5.]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5. 2., 2006. 8. 4., 2008. 6. 20., 2012. 3. 2., 2016. 12. 30., 2019. 7. 2.>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제3조(조경사업·건축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해당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18. 8. 22., 2020. 12. 29., 2023. 12. 19.>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해당 건축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12. 19.>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9.>

1.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3. 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9.>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3. 12. 19.]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2., 2012. 3. 2., 2017. 11. 28., 2021. 6. 22.>

1. 지역조합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5조에서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전문조합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제5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의 자격
4. 조합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3. 12. 19.>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 5. 1., 2005. 5. 2., 2010. 11. 15., 2016. 12. 30., 2017. 11. 28., 2019. 7. 2., 2020. 9. 22.>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3. 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제8조의2(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8. 11., 2023. 12. 19.>

1. 조합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조신설 2018. 8. 22.]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8. 22.>]

제8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40조의3제1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을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8.>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5. 2.]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8. 22.>]

제8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해당 조합(법 제8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8. 22.]

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①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이하 “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 2020. 9. 22.>

②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 2020. 9. 22.>

제10조(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5. 2., 2008. 7. 29., 2010. 11. 15., 2016. 12. 30., 2017. 11. 28.>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 7. 29.>
4. 삭제 <2008. 7. 29.>
5. 삭제 <2008. 7. 29.>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9. 지역조합

②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5. 5. 2., 2008. 2. 29., 2008. 7. 29., 2012. 1. 6., 2016. 10. 25., 2016. 12. 30., 2017. 11. 28.>

1.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발행한 채권
2. 회사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1조의2(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법 제60조의2(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우선출자의 내용·계좌 수·발행가액·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계좌 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②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9. 22.>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총 계좌 수
3.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계좌 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내용 및 계좌 수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11조의9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계좌 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②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③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개정 2020. 9. 22.>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5 삭제 <2014. 12. 23.>

제11조의6 삭제 <2016. 12. 30.>

제11조의7 삭제 <2016. 12. 30.>

제11조의8 삭제 <2016. 12. 30.>

제11조의9(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10(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11(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86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 9. 8.>
[본조신설 2012. 3. 2.]

제11조의12(회원가입 제한기준) 법 제8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재설립한 조합이 부실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회원 가입을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 22., 2016. 12. 30.>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13(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임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0. 9. 22.]

제12조(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 5. 1., 2005. 5. 2., 2010. 11. 15., 2016. 12. 30., 2020. 9. 22.>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 9. 22.]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법 제107조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또는 사업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5. 2., 2016. 12. 30., 2020. 9. 22., 2025. 1. 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제13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중앙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3. 금융회사등에 대한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한다)
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대출

[본조신설 2017. 11. 28.]

제13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① 중앙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3. 금융회사등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 법인에 대한 대출
7.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운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기금 또는 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인에 대하여 대출 당시 여유자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본조신설 2017. 11. 28.]

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5. 1., 2016. 12. 30.>

1. 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 삭제 <2008. 1. 22.>

제16조 삭제 <2008. 1. 22.>

제17조 삭제 <2008. 1. 22.>

제18조 삭제 <2008. 1. 22.>

제19조 삭제 <2008. 1. 22.>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5. 2., 2010. 11. 15., 2016. 12. 30., 2019. 7. 2., 2020. 9. 22.>

1.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회계 또는 산림행정 부문에서 상시근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서 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2.>

②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9. 22.>

1. 사업대표이사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명
3. 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5. 2.]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평균자산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신설 2005. 5. 2., 2016. 12. 30.>

1.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2.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8.>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9. 8.>

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①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회원 또는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25조(경영지도의 통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 5. 2., 2005. 8. 19., 2007. 6. 29., 2012. 7. 24., 2020. 9. 8.>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채무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①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

준은 회장이 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 5. 2., 2020. 9. 8.>

1. 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3.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 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4. 제22조에 따른 조합등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5. 조합등이 국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8.>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 5. 2., 2020. 9. 8.>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림청장(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법 제9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법 제14조 및 법 제61조제2항·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③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2020. 9. 22.>

1. 법 제18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 이용, 가입, 탈퇴 및 지분환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제5항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법 제97조 및 제104조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109조에 따른 비회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및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⑤ 조합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제10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본조신설 2014. 12. 23.]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4. 12. 23.>]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12. 30., 2020. 9. 22., 2026. 3. 24.>

1.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26. 3. 24.>

3. 삭제 <2026. 3. 24.>

4. 삭제 <2026. 3. 24.>

5. 제11조의13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6. 삭제 <2026. 3. 24.>

7. 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② 삭제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12. 30.]

[제28조의2에서 이동 <2014. 12. 23.>]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1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 12. 21.]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 2020. 12. 31., 2023. 12. 21.>
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제2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48조제2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의 준수사항
   마. 공제 모집 시의 금지행위
   바. 공제 모집 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 공제금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 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부활·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합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4. 9. 18.]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9. 12. 2.>
[본조신설 2014. 12. 24.]

참고자료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산림조합법
8. 산림조합법 시행령
9. 산림조합법 시행규칙